

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(balcony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서 포함)는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50%에 대한 납부의무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.  
또한,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,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

| 구 분  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-|--|
| 과세대상       | 부동산 분양계약서(balcony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서 포함)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  |
| 납부기한·방법    | 과세문서 작성일(계약일)이 속한 달의 <b>다음달 10일 까지</b> 수입인지 구입 후 계약서에 첨부   |
|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| 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00:30~22:00 동안 구입 가능<br>② 우체국·은행에서 영업시간 동안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(방문 전 문의 요망) |

## ■ 인지세 납부액(인지세법 제3조)

| 기재 금액(각 계약서의 합계 분양대금) | 인지세 세액 | 납부 부담액(50% 균등부담)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매도인(사업주체)        | 매수인(분양계약자)   |
| 1억원~10억원              | 15만원   | 7만5천원            | <b>7만5천원</b> |

## ■ 인지세(수입인지) 구매방법

### 온라인 이용방법

-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- '**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**' 선택,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### 3. 구매(납부정보 입력)



| 납부 정보 입력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용도       | 인지세 납부         |
| 과세문서 종류  | 1.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|
| 금액       | 75,000원        |
| 건수       | 1건             |

### 4.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'테스트 출력'으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재발행 불가)

### 우체국 이용방법

- 우체국 방문(우편물 취급소 불가)
-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(수수료: 현금납부만 가능)
- 수입인지 발급

## ■ 유의사항

-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시고,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.
-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(소인 등)시,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